

서울특별시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5
----------	------

2017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7년 2월 6일
- 다. 회부일 : 2017년 2월 6일
- 라. 상정일 : 제27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정책관 김 용 복)

가.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은평구 불광동)
- 시설규모 : 지상 4층(214.64㎡)
- 개소일자 : 2017. 10.(예정)
- 이용대상 : 위기 및 가출 청소년(정원 10명)
- 보호기간 : 2년 ~ 최장 4년
- 주요내용 : 가출청소년의 보호,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학업유지 및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07.01. ~ 2020.06.30.)

○ 위탁업무

-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의 조기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계 보호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상담·교육문화활동 및 기타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

○ 소요예산 : 300,000천원(2017년)

- 300,000천원 (2018년)

※ 2017년은 설치 및 운영예산이며, 2018년 소요 예상 운영비 및 사업비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마. 민간위탁 필요성

- 市 직영시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되며,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민간위탁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은평구 불광동 소재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이하 '본 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은평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 위탁 >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은평구 불광동)
- 시설규모 : 지상 4층(214.64㎡), 총 5개호
- 시설구성 : 사무실(1개호), 청소년이용(4개호)
- 수용인원 : 10명(여)
- 위탁기간 : 3년(2017.07.01. ~ 2020.06.30.)
- 위탁업무
 -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의 조기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계 보호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문화활동 및 기타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
- 소요예산 : 300,000천원(2017년), 300,000천원(2018년)
※ 2017년은 설치 및 운영예산이며, 2018년은 소요예산 운영비 및 사업비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향후계획 : 위탁법인 선정 및 계약(2017.4.), 위탁개시(2017.7.), 쉼터개소(2017.10.)

나.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

- 서울시는 총 12개의 청소년쉼터를²⁾(시립12 / 민간1, 구립2) 일시쉼터, 단기쉼터(남성 3개소, 여성 2개소), 중장기쉼터(남성 1개소, 여성 1개소)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금번 동의대상인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여성청소년 10명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로 개소할 예정(2017.10.)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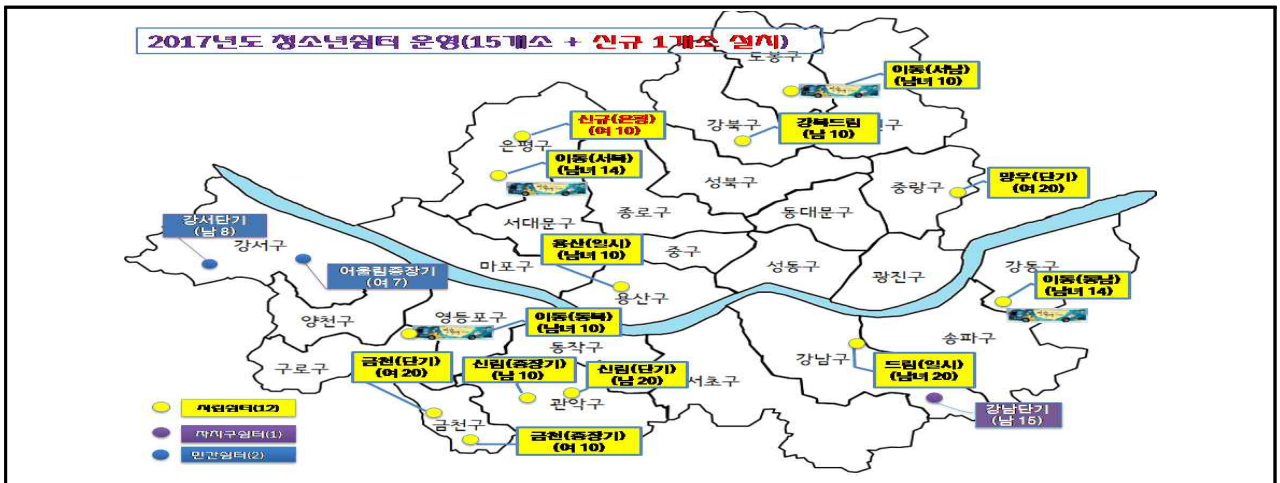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시청소년쉼터현황 - 첨부1

< 청소년 쉼터의 종류 >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개소수	7개소(일시3, 이동4)	5개소	3개소
보호기간	24시간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매회·노숙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심리·정서 상담지원	심리·정서상담지원, 자립지원
기능	- 위기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 조기구조·발견, -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제공 - 의뢰서비스 지원 및 연계	-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의식주 등 보호서비스 - 일시·중장기 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지 대상 청소년 분류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 남·녀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녀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2016년 경찰청으로 신고·접수된 서울지역의 가출청소년은 4,080명(남자1,721, 여자 2,359)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쉼터정원은 198명(남자 102명, 여자96명)으로 수용률은 4.8%에 불과한 바, 청소년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2016년 지역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 >

(단위: 명)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계	21,852	4,080	1,525	1,065	1,555	771	661	430	102	5,988	504	611	744	779	757	807	1,135	338
	남	9,038	1,721	672	463	613	327	264	170	55	2,479	198	249	288	267	309	343	478	142
	여	12,814	2,359	853	602	942	444	397	260	47	3,509	306	362	456	512	448	464	657	196
9~17세	남	7,586	1,430	571	393	520	280	228	147	45	2,053	162	222	230	219	270	283	401	132
	여	9,959	1,765	682	476	715	360	315	210	38	2,645	248	299	360	413	367	356	542	168
18~19세	남	1,452	291	101	70	93	47	36	23	10	426	36	27	58	48	39	60	77	10
	여	2,855	594	171	126	227	84	82	50	9	864	58	63	96	99	81	108	115	28

출처 : 경찰청

- 최근 이혼, 가정폭력, 학대,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가출청소년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시설이 부족한 서북 지역에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활동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청소년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청소년쉼터 설치 및 입주시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민간위탁 적정성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청소년쉼터의 시설관리·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상담·치료, 자립·자활 등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무로, 조사·검사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무이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겠으며³⁾,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⁴⁾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서울시에서 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면 공공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상담·치료·자립·자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게 되어, 개소할 때부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짐.
- 쉼터는 위기청소년의 활동, 학업, 자립 등 청소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며, 쉼터의 운영은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은 보다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얻는 실익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등 다양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만족도가 핵심이라고 하겠음.

라. 수탁사무 지도·점검 및 감독의 필요성

-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도와 점검 등을 실시하며⁵⁾,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⁶⁾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쉼터 평가7)’에서 서울시의 최우수쉼터 비율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효율성과 시민만족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성실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6년 전국 쉼터현황 및 최우수쉼터 선정현황 >

구분	쉼터 수(119)						최우수 쉼터 현황	최우수 쉼터 비율
	계	일시 (28)	단기(51)		중장기(40)			
			남	여	남	여		
계	119	28	26	25	18	22	총 41개소	34%
서울	14	6	3	2	1	2	1개소	7%
부산	6	2	1	1	1	1	3개소	50%
대구	6	2	1	1	1	1	2개소	33%
인천	8	2	2	2	1	1	3개소	38%
광주	5	1	1	1	1	1	1개소	20%
대전	6	2	1	1	1	1	5개소	83%
울산	4	-	1	1	1	1	3개소	75%
경기	27	5	7	8	2	5	15개소	56%
강원	5	1	1	1	1	1	-	-
충북	5	1	1	1	1	1	1개소	20%
충남	7	1	2	1	2	1	2개소	29%
전북	5	1	1	1	1	1	-	-
전남	5	1	1	1	1	1	-	-
경북	6	1	1	1	1	2	3개소	50%
경남	5	1	1	1	1	1	-	-
제주	5	1	1	1	1	1	2개소	40%

○ 또한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서울시 쉼터의 평균 이직률이 30.8%에 달하여 자격 기준을 갖춘 종사자⁸⁾ 3명 중 1명이 매년 쉼터를 떠나고 있음. 이러한 전문가의 이직은 궁극적으로 기관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요소라고 하겠음.

○ 최우수쉼터로 선정된 ‘금천청소년 단기쉼터’의 이직률이 다른 쉼터에 비해 현저히 낮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첨부3.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결과

8) 첨부2. 청소년 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

은 것을 보면, 숙련된 종사자의 유출을 막는 것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집행부는 쉽터 이직률 저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쉽터 종사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처우개선 및 관리 감독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2~2015년 까지의 청소년 쉽터의 이직률 현황>

시설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9월	쉽터별 이직율
소계	37.0%	24.6%	27.6%	31.5%	30.8%
청소년이동쉽터(서북권)	40.0%	20.0%	40.0%	14.3%	28.6%
청소년이동쉽터(서남권)	-	-	33.3%	33.3%	33.3%
동남이동쉽터(더작은별)	-	-	-	33.3%	33.3%
동남이동쉽터(작은별)	-	0.0%	0.0%	85.7%	28.6%
용산청소년 일시쉽터	83.3%	50.0%	44.4%	11.1%	47.2%
망우청소년 단기쉽터	-	-	-	30.0%	30.0%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	-	-	27.3%	27.3%
금천청소년 단기쉽터	8.3%	8.3%	0.0%	0.0%	4.2%
금천청소년 중장기쉽터	-	-	33.3%	66.7%	50.0%
신림단기 청소년쉽터	20.0%	20.0%	10.0%	10.0%	15.0%
신림중장기 청소년쉽터	33.3%	0.0%	0.0%	0.0%	8.3%
청소년드림 일시쉽터	-	-	60.0%	66.7%	63.3%

2015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재분석

마. 종합 검토

- 가출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소년의 보호, 상담, 학업유지, 자립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쉽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 다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쉽터 평가’에서 ‘서울시의 청소년쉽터 민간위탁 성적’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청소년쉽터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험의 축적과 전문성의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음.
- 집행부는 관리 및 운영능력이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쉽터의 종사자들이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년쉽터의 개소목적과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쉼터 15개소(일시 3, 이동 4, 단기 5, 중장기 3)

(단위 : 명, 천원, 2016년도 3월 1일 현재)

연번	시설명	유형	면적 (㎡)	소재지	입소정원		직원현황		개관일	위탁기간	운영단체
					남	여	정규	비정규			시설장(법인대표)
					102	96	82	35			
시립 (12)	용산일시	일시	130.38	용산구 만리재로	5	5	5	5	'07.12.21	'15.1.1 ~'17.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안수경(조기홍)
	드림일시	일시	859	강남구 삼성동	10	10	6	5	'12.12.18	'15.07.01 ~'17.06.30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황철현(양승국)
	강북드림	일시	333	강북구 수유동	10	-	10	1	'15.06.03	'14.08.14. ~'17.06.30.	(학)종신대학교 김은영(김영우)
	서북이동 (여우별)	이동	버스 45인승	청소년 밀집지역(서북)	7	7	4	1	'04.03.31	'15.1.1 ~'17.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안수경(조기홍)
	서남이동 (우리별)	이동	버스 25인승	청소년 밀집지역(서남)	5	5	4	3	'14.12.26.	'15.01.01. ~'17.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안수경(조기홍)
	동북이동 (더작은별)	이동	버스 25인승	청소년 밀집지역(동북)	5	5	6	2	'14.12.26.	'15.01.01. ~'17.12.31	(사)인터넷꿈희망터 김기남(김은호)
	동남이동 (작은별)	이동	버스 45인승	청소년 밀집지역(동남)	7	7	6	1	'13.12.27.	'15.01.01 ~'17.12.31	(사)인터넷꿈희망터 김기남(김은호)
	신림단기	단기	455	관악구 신림동	20	-	10	1	'98.05.18	'15.1.1 ~'17.12.31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강관석(김근상)
	금천단기	단기	536	금천구 가산동	-	20	8	5	'98.05.20	'15.1.1 ~'17.12.31	(사)한국청소년연맹 이미자(한기호)
	망우단기	단기	483	중랑구 망우동	-	20	7	3	'15.1.01	'14.08.14. ~'17.06.30.	(사)삼동청소년회 김병록(김남숙)
	신림중장기	중장기	153.6	관악구 난곡동	10	-	3	1	'04.08.01	'15.1.1 ~'17.12.31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강관석(김근상)
	금천중장기	중장기	106.2	금천구 독산동	-	10	2	3	'14.3.1	'15.1.1 ~'17.12.31	(사)한국청소년연맹 이미자(한기호)
구립 (1)	강남쉼터	단기	298.5	강남구 수서동	15	-	7	-	'98.01.21	'15.09.23 ~'18.09.22	(사북)감리회태화복지재단 홍수정(전용재)
민간 (2)	강서쉼터	단기	115	강서구 화곡동	8	-	4	-	'01.07.02	'16.01.01 ~'16.12.31	(사)새날청소년세상 이은숙(이만호)
	어울림쉼터	중장기	92.09	강서구 화곡동	-	7	3	-	'04.05.17	'16.01.01 ~'16.12.31	(비)아름다운 세상 어울림 김인자(김인자)

붙임2

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 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보호·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행정업무 수행직원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취사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붙임3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 평가 결과

□ 평가 개요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평가주기) '06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 실시('16년 5회)
- (대상시설) 114개소 * '15년 하반기 이후 운영 5개소 제외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평가기간) '16.4월 ~ '16.11월

- (평가내용) 1. 조직 및 운영 2. 이용청소년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인적자원
- 5. 시설환경 및 안전 6. 지역사회 연계 7. 지속발전 및 특성화노력

□ 평가 결과

- 등급별 현황

유형	시설 수	'13년	평균		등급별 시설수(비율)					
					최우수 (90이상)	우수 (80~90미만)	보통 (70~80미만)	미흡 (60~70미만)	매우미흡 (60미만)	
일시	이동	7	85.3	85.6	88.7	4(57%)	1(14%)	2(29%)	-	-
	고정	18			84.4	5(28%)	8(44%)	3(17%)	2(11%)	-
단기	남	26	89.9	87.2	86.9	12(46%)	11(42%)	2(8%)	1(4%)	-
	여	25			87.5	7(28%)	15(60%)	2(8%)	1(4%)	-
중장기	남	17	82.7	84.6	83.8	6(35%)	5(29%)	2(12%)	4(24%)	-
	여	21			85.3	7(33%)	9(43%)	5(24%)	-	-
계		114	85.9	86.0	41(36%)	49(43%)	16(14%)	8(7%)	-	

- 영역별 현황

영역	전체 평균	점수					
		일시		단기		중장기	
		이동	고정	남	여	남	여
A. 조직 및 운영	86.2	79.4	84.0	88.9	89.8	84.0	84.4
B. 이용청소년	74.9	78.3	69.8	78.2	71.5	76.9	76.4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89.1	98.6	90.7	86.9	89.8	85.1	89.5
D. 인적자원	80.6	76.0	75.1	84.6	82.4	79.8	80.6
E. 시설환경 및 안전	94.8	98.0	92.1	96.0	96.9	94.5	92.4
F. 지역사회 연계	85.0	87.4	84.4	87.7	89.0	79.8	81.0
G. 지속발전 및 특성화노력	86.7	90.2	82.6	86.0	90.6	87.1	85.1
합계	86.0	88.7	84.4	86.9	87.5	83.8	85.3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15
----------	------

제출년월일 : 2017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 나.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은평구 불광동)
- 시설규모 : 지상 4층(214.64㎡)
- 개소일자 : 2017. 10.(예정)
- 이용대상 : 위기 및 가출 청소년(정원 10명)
- 보호기간 : 2년 ~ 최장 4년
- 주요내용 : 가출청소년의 보호,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학업유지 및 자립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07.01. ~ 2020.06.30.)
- 위탁업무
 -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의 조기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계 보호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상담·교육문화활동 및 기타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
- 소요예산 : 300,000천원(2017년)
 - 300,000천원 (2018년)
 - ※ 2017년은 설치 및 운영예산이며, 2018년 소요 예상 운영비 및 사업비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직영시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되며,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